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9.(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3. 11. 17.
- 회부일 : 2023. 11. 20. (의안번호 : 23-146)

2. 제안이유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탄소 저감에 기여하며,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 내방객 등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며 유료화
(안 제3조제1항)
- 주차질서 확립과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 부설주차장 출입 통제
(안 제3조제2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 2023. 10. 12. ~ 2023. 11. 2.(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탄소 저감에 기여하며,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 내방객 등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개정내용

- 안 제3조제1항에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며 유료화하는 내용임.
- 안 제3조제2항에 주차질서 확립과 청사관리를 위해 출입 통제하거나 개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임.

6.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 개정내용은 청사 부설주차장은 공공업무와 민원행정처리시 다수의 구민과 민원인이 방문하는 곳으로 주차공간이 늘 부족한 점을 볼 때, 24시 연중 유료로 하는 점에서는

야간시간대 주차차량 감소와 주변 행사가 있을 경우 주차를 하고 외부일정을 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고, 국가 혹은 자치 단체의 영조물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부과되는 사용료의 경우는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주변 거주 주민이 야간무료개방에 익숙한 점을 감안하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차장 이용 변경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이루어져 청사 주변 구민들의 불편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 청사방문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 도모를 위해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확대하여 구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임.